

5.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회 운영 주요 성과

가. 국비 예산 확보

(1) 시 · 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운영경비 국비 지원 확보

전국 18개 시 · 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제 시행 초기, 제도의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과 원활한 사무국 운영 등을 위해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회 협의회도 협의회 구성 초기부터 행정안전부 등에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시 · 도자치경찰위원회 운영비 국비지원을 지속 요구했다. 이와 관련하여 2021. 7. 23.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국비 387억원^{*} 규모의 시 · 도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재정지원방안을 의결함에 따라 기획재정부 예산반영 협의 및 국회 예산편성(증액) 등 관련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회 협의회는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 등과 공조하여 사무국 운영경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회(행안위, 예결특위) 등에 사업 필요성을 설명한 결과 국회 예결위에서 시 · 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2년간 260억원(매년 130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의결했다.(2021. 12. 2.)

18개 시 · 도 자치경찰위원회별 배분 금액은 6~8억 원 정도(경남 7.4억원)로, 사무국 운영경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직급별 단가가 동일한 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출되었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시 · 도 자치경찰위원회별 보조금 사업계획을 받아 교부결정 및 교부 예정이다.

[표 4-9] 시 · 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운영 국비지원 확보액

(단위 : 억원)

| 구분 | 총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북 | 경기남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교부 | 130.0 | 8.9 | 8.1 | 7.4 | 8.1 | 7.4 | 7.4 | 7.4 | 1.3 | 7.4 | 8.7 | 7.4 | 7.4 | 7.4 | 7.4 | 7.4 | 7.4 | 6.5 | |

(2) 지역맞춤형 자치경찰 주민체감사업 국비 지원 확보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회 협의회는 행정안전부에 시 · 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운영경비 국비지원과 함께 지역별 맞춤형 자치경찰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보조금 지원(단기) 및 자치경찰교부세 신설 등 지속 가능한 재원확보(장기)를 지속 건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21.

9. 23.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임원진과 행정안전부장관 면담 시 협의회는 기존 경찰 청 편성 사업비로는 시·도별 신규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세 등 국가지원을 건의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21. 11. 24. 지역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자치경찰 시책 추진을 위하여 「지역맞춤형 자치경찰 주민체감사업 특별교부세 지원 계획」을 전국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시행하고, 지역별 주민체감도가 높은 1개 사업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출토록 하였다.

[표 4-10] 「지역맞춤형 자치경찰 주민체감 사업」 개요

| | |
|------|--|
| 사업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맞춤형 자치경찰 주민체감 사업 |
| 추진배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따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시책 필요 • 경찰청 중심의 일원적 모델 추진에 따라 시도별 신규사업 추진에 한계 ※ 기 편성된 경찰청 예산은 전국적·통일적 경상적 경비 사업 다수 |
| 추진근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 수립 |
| 사업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성(연령별 인구 비율, 관광업 활성화)을 반영한 사업추진을 통해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자치경찰 환경 조성 |
| 사업기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 12. ~ 2022. 9. ※ 시행 1주년 시점인 22년 상반기 내 완료 목표 |
| 사업규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교세 20억원(시·도자치경찰위원회 당 1~2억 정책사업비 지원) |
| 사업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지역 특성과 지역주민 수요를 반영한 자치경찰(생활안전, 아동·여성·청소년·노인 치안 등) 사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및 지역특성 반영, 범죄발생도 및 주민수요 반영 – 투자 우선순위, 사업성과(수혜도),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 위주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한 1개 사업 신 – 민간(개인, 단체, 종교 등) 지원, 소비적 운영비·단순 행사성 사업 제외 |
| 심사지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성 △주민참여 △관계기관 연계협력 △문제해결(생활안전, 교통, 사회적 약자 편의 제고) |
| 심사주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 관계기관 협의체 및 전문가로 심사위원회 구성·선정 ※ 행안부, 분권위, 경찰청 관계자 및 자치경찰 전문가 자문단 합동 심사 |
| 기대효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체감도, 지역특성 반영을 통한 자치경찰 사업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생활에 밀접한 자치경찰 사업추진을 통한 공감대 형성 – 지역 수요 기반 정책을 통한 자치분권 취지 달성 및 포용성 제고 • 범죄예방, 자치경찰에 대한 자발적 참여 유도 및 인식 개선 |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행정안전부의 「지역맞춤형 자치경찰 주민체감 사업」 신청 요구에 따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횡단보도 안심 등불*」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2021. 12. 6. 최종 제출하였으며, 2021. 12. 22. 행정안전부의 「지역맞춤형 자치경찰 주민체감사업 특별교부세 확정 통보」에 따라 1억원의 특별교부세 지원을 확정 통보 받았다.

* 보행자 안전 확보 위해 신호등에 함몰형 표지병, 바닥형 신호등 설치

나. 자치경찰제 완성 촉구 대선공약 건의

(1) 추진배경

2021. 1. 1. 경찰법 개정으로 2021. 7. 1. 자치경찰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국가경찰 조직은 유지한 채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경찰사무 중 일부를 자치경찰사무로 규정하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이를 관리하게 하는 이른바 일원적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었다. 하지만 일원적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형태로써, 지역특성과 치안수요에 맞는 실질적 의미의 자치경찰제 실현에는 한계가 발생함에 따라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회협의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실시에 즈음하여 자치경찰제의 완성을 대선공약화 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기로 하였다.

[그림 4-7] 자치경찰제 완성 촉구 대선공약 건의



(2) 추진경과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하면서 각종 기관·협의체 및 시민단체 등은 자치경찰제를 포함한 자치분권 강화 관련 제도개선 등의 대선공약화를 추진하였다.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도 자치경찰제 개선을 위한 대선공약화 건의를 계획하고, 회장 위원회인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타 기관·단체의 자치경찰제 관련 대선공약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건의문 초안을 수립하였다. 이후 대선공약 건의문은 전국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보완 및 확정되었다.

[표 4-11] 주요 기관·단체 자치경찰제 관련 대선공약 제안내용

| 기관·단체명 | 주요 제안내용 |
|--------------------------|---|
|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지사의 자치경찰사무 책임성 확보를 위한 권한부여 추진 자치경찰사무 수행 비용(인건비·운영비 포함) 전액 국비지원 주민체감형 자치치안체계 확립을 위한 국가-자치경찰 이원화 궁극적으로 자치경찰 중심의 일원화 모델 도입·운영 필요 |
|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치경찰장(서장) 주민 직선제 도입, 실질적 자치경찰제 구현 제도 시행 비용 국가지원, 지방교부세 및 범칙금 등 재원 확보 |
| 참여연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치경찰제 실질화(시·도경찰청장 추천권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부여 등 권한 대폭 강화, 자치경찰 조직 신설) |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2022. 2. 10. 11:20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주관으로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과 언론사 기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자치경찰제의 완성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하고 건의자료 및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기자회견은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회장의 건의문 낭독과 기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명의의 대선공약 건의자료를 제20대 대통령선거 입후보자(정당)에 2022. 2. 14. 공문 송부하였다.

(3) 주요 건의내용

(가) 자치경찰사무 개념 명확화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사무 범위에 자치경찰사무를 명시하여 자치경찰사무가 기관위임사무인지 자치사무인지에 대한 논란을 해소함으로써 제도의 근간이 안정적으로 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기능 실질화

시·도별 경찰공무원 승진 T/O 배정 시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의 승진 T/O를 분리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별도 배정하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2조 개정을 통해 경감→경정, 경정→총경에 대한 승진 추천권을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부여토록 한다.

「경찰공무원법」 제17조 및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3조를 개정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내 보통승진심사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를 개정하여 지구대·파출소를 시·도경찰청 자치경찰부로 이관하고, 지구대·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임용권 대상에 포함되도록 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을 개정하여 자치경찰부의 조직·정원 및 사무조정 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사전 협의토록 하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무에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조직 업무'를 추가한다.

자치경찰부장 임용 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추천하도록 하거나 개방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 간 치안서비스 불균형을 최소화하고 주민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칭) 자치경찰특별회계 운영, 자치경찰교부세 신설, 과태료 및 범칙금 등의 시·도 이관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주재원을 확보토록 한다.

[표 4-12] 자치경찰제 시행 재원 확보 방안

| 구 분 | 주요내용 |
|---------------|---|
| 자치경찰교부세 신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세(酒稅, 연간 약 3조원)의 약 5~10%를 세입으로 하는 방안 검토 (2022년 정부 예산안 예비심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부대 의견) |
| 과태료, 범칙금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고금 관리법」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칙금) '20년 기준 총 약 8,552억원(과태료 7,739, 범칙금 813) 수준 (특별법 사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0조 :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 · 범칙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을 계상 |

(다)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기존 국가경찰 조직 체계에서 자치경찰을 분리 · 이원화하여 신설된 자치경찰 조직(시 · 도자치경찰위원회)이 자치경찰사무(담당 경찰공무원)을 직접 관장하고 지휘 · 감독할 수 있게 한다.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안은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시 · 도경찰청의 수사사무(국가수사본부 지휘) 부서와 정보 업무 수행부서를 제외한 모든 기능의 조직과 인력을 시 · 도자치경찰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식과, 두 번째로 지구대 · 파출소를 포함한 시 · 도경찰청 자치경찰사무 관련 부서(생활안전, 여성 · 청소년, 교통 · 경비) 조직과 인력을 시 · 도자치경찰위원회 소속으로 이관하는 방식이 있다.

조직과 함께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을 지방 특정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되, 지방의 재정부담과 신분변동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이 경우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이관 및 신규 채용 인력의 교육 · 훈련은 국가경찰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현행 경찰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법령 소관부처가 경찰청으로, 시 · 도(자치경찰위원회)의 입장 반영이 가능한 행정안전부나 자치분권위원회의 법령 제 · 개정 발의 등 관여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단기적으로는 현행 경찰법의 소관부처를 경찰청 단독에서 행정안전부 · 경찰청 공동 소관으로 변경하고, 궁극적으로는 경찰청 소관의 (舊)경찰법을 개정하여 자치경찰제를 단독으로 규정하는 법률을 따로 제정한다.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는 우선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과 같이 비교적 규모가 작은 광역지방자치단체부터 시범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전 시 · 도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그림 4-8] 자치경찰제 개선 추진방향 및 주요과제

추진
방향

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



① 자치경찰사무 개념 명확화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에 자치경찰사무 명시

- ① 자치경찰사무 개념 명확화를 통한 자치경찰위원회 지위 · 역할 재정립

② 자치경찰위원회 기능 실질화

인사권 실질화

- ① 임용권 범위 확대(지구대 · 파출소)
② 보통승진심사위원회 및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등

안정적 재원 확보

- ① 자치경찰교부세 및
자치경찰특별회계 신설
② 과태료 · 범칙금 시 · 도 이관

③ 국가경찰 – 자치경찰 이원화

자치경찰 조직 · 인력 자치경찰위원회 이관

- ① 자치경찰조직 신설(기존 경찰 조직 체계에서 분리 · 이원화)
② 자치경찰사무 경찰공무원의 지방직 전환
③ 「경찰법」 소관 부처 변경(경찰청 → 행안부 · 경찰청 공동 소관)

[자치경찰제 완성 촉구 대선 정책공약 건의문(전문)]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회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 건의문
자치경찰제의 완성을 촉구합니다

-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즈음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자치경찰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 2021년 7월 1일, 대한민국 경찰 창설 76년만에 지역별 맞춤형 치안활동을 수행하는 자치경찰제가 출범하였습니다.
- 국가경찰에 의한 ‘관리’ 중심의 획일적 치안행정 체계에서 벗어나, 주민의 참여와 지역실정을 반영하는 지역별 치안행정 체계로 내딛게 된 것은, 도입 그 자체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의 기념비적인 성과입니다.
-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차별화된 경찰서비스가 전개되고, 치안행정에 대한 주민참여가 활성화 되고 있는 것은 ‘왜 자치경찰제인가’를 더욱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의 자치경찰제는 과도기적 상황입니다. 이른바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화 모델’인 현행 자치경찰제에 대해 ‘자치경찰사무는 있으나 자치경찰은 없는 자치경찰제’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기존 국가경찰이 수행하던 사무 일부를 자치경찰사무로 명명한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 무엇보다도, 자치경찰사무의 법적 성격이 모호합니다.
자치경찰사무가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에 명시되지 않아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경비부담 및 최종적인 책임귀속 주체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자칫,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경우
자치경찰제의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 또한, 자치경찰 사무를 기존 국가경찰이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인사·조직 운영상의 제약이 있습니다.
 - 아울러,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및 재정분권 시행에 따라 '23년
이후 전액 시·도 예산으로 자치경찰사무를 운영하게 되면,
시·도 재정력 차이로 인한 치안품질 격차 발생이 우려됩니다.
- 이러한 제약과 우려를 극복하고, 자치경찰의 정체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차기 대통령 임기 내에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을 도입함이 바람직합니다.
- 다만, 제도 도입이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이원화 모델로 가는 중간 단계로서 「자치경찰위원회의 기능
실질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 ① 지방자치법상 지자체 사무범위에 자치경찰사무를 명시하고,
 - ②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실질화와
 - ③ 자치경찰교부세 신설 등 자치경찰제 운영의 안정적 제원
 확보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역할 재배분은 자치분권 2.0 시대에
지역치안의 효율성 극대화와 경찰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 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제의 완성을 실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 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대구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학배 위원장 정용환 위원장 최철영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광주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대전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병록 위원장 김태봉 위원장 강영옥

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태근 위원장 김상봉 위원장 김덕섭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신현기 위원장 송승철 위원장 남기현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권희태 위원장 이형규 위원장 조만령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순동 위원장 김용구

2022년 2월 10일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장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다. 자치경찰제 개선 새 정부 국정과제화 추진

(1) 추진배경

국가-자치경찰 일원적 제도 시행으로 인해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한 인사, 재정 등 주요 분야에서 제도 추진과정 상 크고 작은 문제점과 한계가 노출되었다. 이에 따라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의 자치경찰제 완성 촉구 대선 정책공약 건의의 결과, 자치경찰제 개선이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됨으로써 제20대 대통령 임기 내 실질적인 제도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주력했다.

(2)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면담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2022. 4. 18. 14:00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장을 면담하고, 자치경찰제 추진과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은 김현태 협의회장(경남위원장)과, 이병록 수석부회장(인천위원장), 김용구 제주위원장, 황문규 간사(경남 사무국장)가 참석한 가운데 40분가량 진행되었다.

김현태 회장은 제도 이원화(세종·제주 시범운영 → 타 시·도 확대), 지구대·파출소 소속 자치경찰부(생활안전과) 환원, 자치경찰사무 인사·재정과 관련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기능 실질화 등 자치경찰제 전반의 개선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김현태 회장은 제도 이원화가 되더라도 자치경찰 사무의 권한과 범위 등은 축소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김용구 제주위원장은 제주자치경찰의 경우 일원화 제도 시행으로 기존 조직 체계와 상충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고, 제주자치경찰부터 시범적으로 이원화 운영을 할 경우,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 및 권한 축소는 경계하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병록 수석부회장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파견된 시·도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파견 실태를 설명하고, 이들 파견 경찰공무원에 대한 정원화 지원을 요청했다.

황문규 협의회 간사는 이원화에 따른 비용 최소화 등을 위해서는 국가경찰을 자치경찰로 전환하는 방식의 이원화가 필요하며, 기초 단위 자치경찰제 강화를 위해 현행 112종합상황실 소속의 지구대·파출소도 자치경찰에 포함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제도 추진 애로사항에 대해 개선이 필요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제도 개선과 관련한 사항이 인수위 보고서에 국정과제화 되어 채택 예정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 강화와 경찰 권한 분산 차원에서 일부 수사권을 포함한 자치경찰 영역이 지속 확대되어야 하며, 인수위 차원에서 제도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림 4-9]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면담



(3) 「자치경찰제 권한 강화」 국정과제 반영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의 전방위적 제도개선 건의 활동의 결과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2022. 4. 27. 자치경찰제 권한 강화가 실천과제로 포함된 「지역균형발전 비전」을 발표하였다. 자치경찰제 권한 강화의 세부 내용으로는 △국가경찰로부터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를 통해 시·도 소속의 자치경찰이 자치경찰사무를 집행하고, 시·도지사가 지휘권과 인사권을 행사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 자치경찰 시범사업 실시 검토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 4-13]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 비전」 체계

| 체계 | 주요내용 |
|------|---|
| 비전 |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
| 약속 | (약속1)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 |
| 국정과제 | ① 지방분권 강화 |
| 실천과제 | <p style="text-align: center;">자치경찰권 강화</p> <p>① 국가경찰로부터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를 통해 시·도 소속의 자치경찰이 자치경찰사무를 집행하고, 시·도지사가 지휘권과 인사권을 행사</p> <p>②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 자치경찰 시범사업 실시 검토</p> |